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중 소 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2040호, 2026. 9. 29. 공포, 2027. 3. 30.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요건을 정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범위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으로 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진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기업을 말한다.
- ⑦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을 말한다.
- ⑧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연 락 처	(044) 204 - 7576